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2회 임시회

**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【의원발의】
검토보고서**



2020. 7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0. 7. 15.
경기도시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발의자: 박종길 의원 등 9명(이영빈, 이신자, 배지훈, 박정환, 서민우, 윤관근, 안영란, 박왕규)
- 발의일자: 2020. 6. 30.
- 회부일자: 2020. 7. 3.
- 검토기간: 2020. 7. 3. ~ 7. 9.

2. 개정이유

- 환경부의 「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」(2019. 3.)에 따라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재해 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였고,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강화 및 「폐기물관리법」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의 분리·보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으로 위임된 문구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
-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배출시 쓰레기봉투의 무게 제한 신설(안 제5조 제5항)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강화 신설(안 제12조제3항 제6호부터 제8호)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(안 제12조의2)
-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신설(안 제15조 제2항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-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제2항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0. 6. 30. ~ 2020. 7. 10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, 안전기준 신설, 보관시설 설치기준 신설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집·운반 처리 과정을 구체화 하고자 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【관계 법령】

□ 폐기물관리법

제15조(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)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생활폐기물배출자"라 한다)는 관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3., 2013. 7. 16.>

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·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,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에서는 분리·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3., 2013. 7. 16., 2019. 11. 26.>

③ 삭제 <2013. 7. 16.>

④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·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·관리 기준,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제16조의3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(이하 "안전기준"이라 한다)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
 2.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
-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1.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·운영할 것

- 가.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
 - 나.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
2. 안전화, 안전조끼,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
 3.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. 다만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가.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
 - 나. 3명(운전자를 포함한다)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
 - 다. 폭염·강추위, 폭우·폭설, 강풍,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2조의2(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)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9. 12. 31.)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가. 보관시설 등은 수집·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.
 - 나.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다.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, 병류, 캔류, 플라스틱류, 고철류, 비닐류, 폐형광등 및 그 밖에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·비치하여야 한다.
 - 라. 보관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.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단독주택의 다중주택·다가구주택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

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cm 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.

가.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×세로 400mm×높이 900mm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

나.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×세로 400mm×높이 900mm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

[조문신설 2017.12. 1.]